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8. 9. 17.(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반환 재정에 관한 건 (2018-51(서)-450)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납부된 요금 중 61,875원 및 이에 대한 각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 (주) 조선방송 <TV조선 뉴스 9> - (2018-51(서)-451)

- (주)조선방송의 2018년 4월 17일자(21:00~22:00) <TV조선 뉴스 9>에 대한 '주의' 제재 조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2018-51(서)-452)

- 협찬고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협찬고지 방법 등을 합리화기 위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라.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8-51(서)-453~457)

- 「방송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에스비에스 등 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에스비에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2,600만원
(주)뉴스토마토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500만원
(주)한국낚시채널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2호	1,500만원
(주)한국낚시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2호	1,500만원

마.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8-51(서)-458~459)

-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호	850만원
춘천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2호	1,050만원